

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 지정

「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시행 시기: 2021. 9. 6.
2. 사용용도
 - 법인·부동산등기 전자신청
 - 전자공탁
 - 그 밖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용도 일부
3. 장래 추가될 사용용도는 별도 공고 예정
4.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은 부여되지 않음
5. 공고 방식: 인터넷등기소에 게시

법 원 행 정 처 장